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59
----------	-----

발의연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정인 의원 (1명)  
찬 성 자 : 이상훈, 이승미, 권순선,  
전병주, 박순규, 여 명,  
이성배, 신정호, 김소영,  
전석기, 김경우, 오현정,  
이영실, 이병도, 문장길,  
노승재, 이태성, 홍성룡,  
김화숙, 문병훈, 송아량,  
이은주 의원 (22명)

##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급이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9.)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서울시 조례 반영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 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

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함.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

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장).

사.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6조제1항).

아.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0조, 안 제13조).

자.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7조제5항, 제6항).

차.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함.

제2조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증장애인의</u>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u>중증장애인이</u>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중증장애인</u>"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u>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u>」에서 정하는 <u>중증장애인에</u>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2.·3. (생략)</p> <p>4. "<u>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u>"란 「<u>장애인복지법</u>」 제54조에 따라 <u>중증장애인의</u> 자립생활을 실현하기</p>	<p><u>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장애인</u>----- ----- ----- <u>장애인</u>----- -----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2.·3. (현행과 같음)</p> <p>4. "<u>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u>"----- ----- <u>장애인</u>-----</p>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7.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추가 제공)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

-----  
-----  
-----  
-----  
-----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 장애인 -----  
-----  
-----  
-----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센터의 지원) ① ----- 장애인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사업) ----- 장애인 -----  
-----  
-----

제13조(추가 제공) -----  
-----  
----- 장애인 -----  
-----

가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  
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  
-----  
----- 중증장애인 -----  
-----.

② (생략)

---

제17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장애인-----  
-----  
-----.

⑥ ---- 장애인-----  
-----  
-----.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  
-----  
----- 장애인 -----  
-----.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제1항에서 ‘중증장애인’ 을 ‘장애인’ 으로 바꾸어 비용이 발생하나,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용추계 곤란
  - ※ 2019년 이룸통장지원사업: 만 18-34세의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000명 선정하여 월 15만원 매칭 지원(서울시복지재단)
- 장애인등급이 폐지됨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으로 인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 장애인복지법 제 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에서 중증장애인 대신 장애인으로 용어변경(2019.7.1.시행 예정, 2017.12.19. 일부개정)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